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광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419

발의연월일: 2024. 7. 31.

발 의 자:임광현・이기헌・조계원

조 국・조인철・정진욱

안태준 · 강준현 · 정일영

이건태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월 10만 원 이하에서 2022년 월 20만 원 이하로 18년 만에 상향됨.

한편 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의 '점심값'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. 2024년 1월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9만 1천 원으로 집계됐는데,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1.1% 줄어든 수준임. 또한 외식물가 지수는 120.53으로,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8월(108.87) 대비 10.7%가 올랐음. 이러한 가운데 직장인들의 식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비과세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 을 완화하고자 함(안 제12조제3호러목).

법률 제 호

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호러목 중 "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"를 "식사대로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받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조(비과세소득) 다음 각 호의	제12조(비과세소득)		
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			
세하지 아니한다.		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	3		
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			
하는 소득			
가. ~ 더. (생 략)	가. ~ 더. (현행과 같음)		
러.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	러		
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			
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			
또는 근로자(식사 기타 음			
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			
자에 한정한다)가 받는 <u>월</u>	<u>식</u>		
20만원 이하의 식사대	사대로서 월 30만원 이상		
	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		
	정하는 금액		
머. ~ 저. (생 략)	머. ~ 저. (현행과 같음)		
4. • 5. (생략)	4. • 5. (현행과 같음)		